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2. 9 선고 2019가단1507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신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1. 26.

판결 선고2021. 2. 9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. 4. 19.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6. 7.경부터 2018. 10. 17.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(E호, F호, 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서 'G'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던 C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28,925,5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.

나. 이에 원고는 2018. 10. 26. C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지법원은 2019. 4. 25. "C은 원고에게 28,925,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1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는

판결(2018가소25113)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9. 5. 17. 확정되었다.

다. C은 위 소송 도중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원리금으로 2018. 12. 11. 5,000,000원, 2019. 2. 11. 3,000,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원금은 21,949,590원이 남았다.

라. 피고는 2019. 4. 19. H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,000,000원, 차임 월 2,000,000원, 기간 2020. 4. 15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, H의 동의하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받았다(이하 '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'이라 한다).

마. 그 후 H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함으로써 위 채권은 소멸하였고, 위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다.

바. C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, 11 내지 15, 17호증, 을 제11,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중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C의 관계에 비추어 C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

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
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,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,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자신이 H에게 지급해야 했던 연체차임 등을 H로부터 반환 받을 이 사건 채권에서 모두 공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채권액인 20,000,000원을 전액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상규

별지